

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 및 시사점 분석:^{*}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토대로 하여

L'Analyse sur la Loi française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et l'Examen des Suggestions

심 승 범^{**}

Seungbeom SIM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한국의 GPS 위치추적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 |
| II. 2014년 이전 GPS 위치추적에 대한 판례 상 허용 | V. 나오며 |
| III.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 제정 | |

GPS는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장치이다.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GPS 위치추적의 무제한적 허용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법상 GPS 위치추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달리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통해 GPS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내에 삽입하여 이를 활용 및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입법부는 2014년 3월 28일 법률을 통해 GPS 위치추적의 정의, 적용범위, 기간연장 및 전개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한국법상 법률의 부재는 GPS 위치추적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진다. 현재 GPS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아, 한국에서는 이를 강제

<https://doi.org/10.35148/ilsilr.2023..54.133>

투고일: 2023. 3. 14. / 심사완료일: 2023. 4. 26. / 게재확정일: 2023. 4. 27.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1324).

** 파리1 팡테옹-소르본 대학교 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수사로 간주한다. 강제수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한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수사상 GPS 위치추적을 실행할 때 영장을 요하지 않으며, 분명한 법적 근거하에 전개된다. 따라서 프랑스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률 분석은 국내법상 GPS 위치추적 법률 제정 및 영장주의의 엄격성 완화 등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주제어] GPS 위치추적, 강제수사, 인권침해, 과학수사, 프랑스 형사소송법

I. 들어가며

GPS는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자 방법이다.¹⁾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GPS가 활용되고 있다. 그중 법학, 특히 형사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단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만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절차상 GPS의 무제한적 허용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요구된다. 이는 법률로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법상 GPS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²⁾ 이러한 모호성은 GPS 위치추적에 대한 과도한 엄격성으로 이어진다. 인권 보호를 위해 GPS 위치추적을 너무 엄격히 규정함에 따라 실선에서 활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³⁾ 특히 이는 불법적 수집방법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 배척 문제와 관련 있다.⁴⁾ 반면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달리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⁵⁾을 통해 GPS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내에 삽입하여 이를 활용 및 규제하고 있다. 2014년 이전 프랑스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다.⁶⁾ 따라서 본 논문은 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관련 2014

1) Frédéric DEBOVE/François FALLET/Iris PONS, *Précis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8e édition*, Puf, 2020, p. 848.

2) 김지온/박원규,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95쪽.

3) 김지온/박원규, 위의 논문, 83쪽.

4) 김종구,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3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64쪽.

5) Loi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년 3월 28일 법률 및 이후 개정된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국내법상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우선 2014년 이전 프랑스 수사상 GPS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I), 현재 GPS 위치추적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II), 나아가 전개 (III)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후 한국법상 GPS 위치추적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프랑스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IV).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한국법상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 제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I. 2014년 이전 GPS 위치추적에 대한 판례상 허용

프랑스는 2014년 이전 GPS 위치추적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고, 단지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⁷⁾ 당시 GPS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2011년 11월 22일 프랑스 대법원은 GPS의 사용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유럽인권협약 제8조⁸⁾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⁹⁾ 이러한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한다. 2010년 9월 2일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법적 목적에 비례하고...민주주의 사회 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때, 형사절차에서 GPS 사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허용된다.¹⁰⁾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역시 이를 재확인하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법기관의 통제 아래 헌법상 보장된 권리 제한은 실제적 진실발견에 필요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비례”¹¹⁾할 때 허용된다. 또한 2019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GPS는

6) Bernard BOULOC/Haritini MATSOPOULOU,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19e édition*, Sirey, 2014, p. 270;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2 octobre 2013, n°13-81949 et 13-81945.

7) Jean PRADEL, *Procédure pénale 20e édition*, Cujas, 2019, p. 450; 김유근/김정연/최준혁/김정환/박성민,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244쪽.

8)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9)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2 novembre 2011, n°11-84.308.

10) CEDH(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 septembre 2010, *Uzun c/ Allemagne*, n° 35623/05.

개인의 차량 또는 기타 이외 모든 물건, 특히 휴대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적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강압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¹²⁾을 재확인했다.¹³⁾

2014년 이전 GPS 위치추적은 주로 중범죄와 관련되었을 시 판사의 통제 아래 이루어 졌다.¹⁴⁾¹⁵⁾ 이는 예심판사의 수사 관련 일반규정인 형사소송법¹⁶⁾ 제81조를 근거로 한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예심판사는 법률에 따라 진실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¹⁷⁾ 또한 동조 제4항은 “예심판사가 스스로 모든 예심수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일체의 예심수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51조¹⁸⁾ 및 제152조¹⁹⁾에 정한 요건 및 동조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수사위임(Commission rogatoire)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 역시 수사 및 소추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이를 행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검사는 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활동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일반규정인 만큼 수사상 GPS 허용에 대한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²⁰⁾

11) Conseil constitutionnel, 25 mars 2014, n°2014-693.

12) Conseil constitutionnel, 21 mars 2019, n°2019-778.

13) 물론, GPS 위치추적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될 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Corinne RENAULT-BRAHINSKY, *L'essentiel de la procédure pénale 19e édition*, Gualino, 2019, pp. 25-26.

14) Jean PRADEL, *op.cit.*, p. 450.

15) 프랑스 입법부는 1991년 12월 9일 법률을 통해 중범죄, 특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GPS 사용을 허가했다, 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 26e édition*, Dalloz, 2017, p. 131.

16) 프랑스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문은 2008년과 2011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이후 삽입 또는 수정된 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보충하였다.

17) 동조 제4항은 “예심판사가 스스로 모든 예심수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일체의 예심수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51조 및 제152조에 정한 요건 및 동조에 정한 제한에 따라 수사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실행도 명시하고 있다.

18) “예심판사는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의 방법으로, 그 법원의 모든 판사, 예심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심수사를 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19) “① 공조촉탁을 받은 사법관 또는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의 범위 내에서 예심판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② 다만, 사법경찰관은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는 신문 및 대질을 할 수 없고, 사소청구인 또는 출석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

20) Jean PRADEL, *op.cit.*, p. 450.

III.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 제정

1. GPS 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프랑스에서는 수사상 GPS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PS를 허용하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요청되었다.²¹⁾ 동시에 GPS 사용에 대한 국내법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²²⁾ 이에 따라 프랑스 입법부는 GPS 관련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2조~제230-44조)을 제정하였다. 먼저 제230-32조 제1항에서는 GSP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 영토 내에서 개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유권자나 소지자의 동의 없이 이동수단 또는 모든 다른 물건을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수단”.

이에 덧붙여 프랑스 대법원은 GPS를 다른 이동장치, 휴대폰 추적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문제 된 장치는 제230-32조 및 이하 규정에서 검토된,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GPS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장치는 형사소송법 제77-1-1조²³⁾를 근거로...상이한 시간대별로 시행되는 것이다”.²⁴⁾ 다시 말해 “GPS는 국가 영토 내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 사물 또는 이동수단을 감시하는...것”²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GPS와 다른 장치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위 법률은 GPS의 실행 방법과 적용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실행된다. : 1°중범죄나 3년 이상의 구금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 또는 예심의 경우; 2°제74조, 제74-1조 및 제80-4조²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21) 김유근/김정연/최준혁/김정환/박성민, 앞의 보고서, 244쪽.

22) Serge GUINCHARD/Jacques BUISSON, *Procédure pénale 11e édition*, LexisNexis, 2018, p. 512.

23)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후자의 통제 아래 사법경찰관리는 기명 데이터의 정보처리시스템(Systèmes informatiques ou traitements de données nominatives)(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하여 규정상 정해진 기준으로)을 포함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개인, 공사법상 기관 및 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모든 방법으로 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에 대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 novembre 2016, n°16-82.376.

25) Serge GUINCHARD/Jacques BUISSON, *op.cit.*, p. 511.

26) “① 사망 원인 또는 제74조 및 제74-1조에 규정된 실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행함에 있어, 예심판사는 제1권 제3편 제1장에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감청은 제100조 및 제100-1조 내지 제100-7조에 규정한 조건 및 제한하에 시행된다. 통신감청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척들은 부대사소 청구인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실종자가 발견되고 그가 성인인

사망 또는 실종을 원인으로 수색하는 수사나 예심 절차의 경우; 3°제74-2조²⁷⁾에서 규정하는 도주하는 자를 수색하는 절차의 경우”²⁸⁾ 또한 동조 마지막 항은 “GPS는 사법경찰관의 책임 아래 사법경찰관에 의해 시행되거나, 현 장에서 규정하는 방법과 조건하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은 공권력의 사용에 있어 GPS 위치추적에 대한 필요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위 적용범위는 2019년 이전에 더 제한적이었다. 2014년 3월 28일 법률 제정 당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2조는 GPS 위치추적의 적용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230조-32조 제1호(1°)는 “3년 이상의 구금형으로 처벌되는 형법전 livre II 또는 제434-6조 및 434-27조에 규정된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 또는 예심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선에서 GPS 위치추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프랑스 입법부는 2019년 3월 23일 법률²⁹⁾을 통해 제230-32조의 조문을 더 단순화하여 적용범위를 확장시켰다.³⁰⁾³¹⁾

이 장치의 사용은 장소별로 구별되며, 주로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진다.³²⁾³³⁾ 공적 장소에서의 실행에 관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3조에 따르면, “제230-32조에서의 실행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되어 진다 : 1°현행범 수사, 예비수사 또는 제74조³⁴⁾에서 제74-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절차 범위 내 검사장에 의해 제74조에서 제74-2조에 명시된 경우,

경우, 그 소재지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소청구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미성년자나 보호대상 성인인 경우 예심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사소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다.”

27)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사법경찰리의 조력과 검사의 지시에 따라 도주한 자를 찾기 위한 제56조 내지 제62조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8)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2조.

29) La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1).

30) Yves MAYAUD, *Le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 Terrorisme – Poursuites et indemnisation*, Dalloz, 2020, n° 213-215.

31) 반면 2019년 3월 23일 법률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3조에 규정된 GPS 위치추적 실행 기간에 대해 범위를 좁혔다, Christian GUÉRY, *Le droit et pratique de l'instruction préparatoire*, Dalloz Action, 2022, n° 564.32; 그럼에도 제230-3조 제1항은 사후적위헌법률심사(OPC)에 회부되었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23일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 결정했다, Dorothee GOETZ,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 du dispositif de géolocalisation sur autorisation du parquet”, *Dalloz Actualité*, le 30 septembre 2021, n° 1 et ss.

32) Jean PRADEL, *op.cit.*, p. 452

33) 2017년 5월 23일 프랑스 대법원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3 mai 2017, n°16-87.323)에 따르면, 호텔 주차장 등과 같은 장소는 일반 거주지로 볼 수 없다.

34) “검사 및 예심판사가 동시에 현장에 있는 때에는, 검사는 정식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장에 있는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 제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다.”

또는 다른 경우에 있어 중죄나 제706-73조³⁵⁾ 또는 제706-73-1조³⁶⁾에 언급된 범죄의 경우 최대 연속 15일 기간 동안 시행 가능하다...”.

이어 GPS의 기간연장에 대해, “이 수행은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석방구금판사에 의해 형식과 기간이 같은 조건으로 최대 한 달간 허가 되어진다”.³⁷⁾ 다만 “예심 또는 제74조, 제74-1조 및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또는 실종의 원인을 찾기 위한 수색의 심리의 경우, 예심판사에 의해 형식과 기간이 같은 조건으로 최대 4달까지 연장될 수 있다”.³⁸⁾ “이 수행의 전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706-73조 또는 제706-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³⁹⁾ 동조 제5항에 따르면, “검사장, 석방구금판사, 예심판사에 의한 결정은 이유를 붙여, 필요한 관련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과 법률적 요소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해 생각건대, GPS 위치추적의 장기간 연장과 불복에 대한 불인정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비례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적 장소의 경우 공적 장소에서의 GPS 실행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4조 제1항에 따르면 “제230-33조 1°과 2°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 수사 또는 예심이 필요할 때, 검사장 또는 예심판사는 제230-32조에 명시된 기술적 방법의 설치 또는 철회의 목적으로 제59조⁴⁰⁾에 언급된 시간 이외, 자동차 차고... 등 이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장소 내 소유권자나 점유자 또는 권리를 가진 모든 이들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제1항보다 더 자세히 사적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일 현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장소와 다른 사적 장소가 관련 있다면, 이 실행은 제230-32조 2°과 3°에 명시된 경우 또는 중죄나 구금형 5년 이상의 경죄에 대한 수사 또는 예심일 때 한하여 개입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장소가 거주지와 관련될 시, 보다 엄격한 조건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35) 범죄집단에 의한 살인과 가혹행위 및 고문, 마약, 유괴, 감금, 인신매매, 매춘알선, 집단 절도, 공갈 등 관련.

36) 범죄집단에 의한 사기,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적 성격의 데이터 자동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해, 탈옥 은닉, 세탁, 강도 등 관련.

37)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3조 제2항.

38)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3조 제3항.

39)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3조 제4항.

40) “① 수색장소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시 이전 및 21시 이후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없다. ② 제56조, 제56-1조, 제57조 및 본조에 정한 방식에 위반한 때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4조 제2항에 따르면 “...만일 이 사적 장소가 거주지라면, 허가는 다음의 경우들에 있어 서면에 의한 결정으로 교부되어야 한다 : 1° 제230-33조의 1°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목적 아래 검사장을 거쳐 석방구금판사에 의해; 2° 제230-33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서 예심판사에 의해 혹은 만일 제59조에 규정된 시간 이외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 이와 같은 목적 아래 예심판사를 거쳐 석방구금판사에 의해”.

설령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금지된 장소가 존재한다. 이는 동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230-32조에 언급된 기술적 방법의 설치는 제56-1조부터 제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와 관련될 수 없으며, 제100-7조⁴¹⁾에서 적시된 자의 사무실이나 자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직업상 비밀의무가 보장된 장소와 관련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6-1조⁴²⁾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가택에 대해, 제56-2조⁴³⁾는 신문사 또는 TV나 라디오 방송사에 대해, 제53-3조⁴⁴⁾는 의사, 공증인, 집행관의 사무실에 대해, 제56-4조⁴⁵⁾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보관 장소에 대해, 제53-6조는 법원 또는 사법기관에 일하는 자의 자택에 대해 GPS 위치추적을 금지하고 있다.

2. GPS 위치추적의 전개

“GPS의 전개에 관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이를 매우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⁴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GPS는 사법관의 통제 아래 실행된다. 그러나 긴급이 요할 경우 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5조 제1항에 따르면, “증거 보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사람,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입히는 긴급한 경우, 제230-32

41) “①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예심판사가 당해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② 변호사의 사무소 또는 주거에 접속하는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예심판사가 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③ 사법관의 집무실 또는 주거에 접속하는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사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사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④ 본조에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 감청은 무효로 한다.”

42) “변호사의 사무소 또는 가택의 수색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이 혐의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문서로써 결정하고, 사법관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3) “신문사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의 사옥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만이 실시할 수 있다...”.

44) “의사, 공증인, 代訴士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이 각 관계자가 속하는 직업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45)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만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안보자문위원장이 입회한다.”

46) Jean PRADEL, *op.cit.*, 2019, p. 452.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행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실행되거나 명령될 수 있다”. 이는 긴급에 의한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후자는 제230-33조와 제230-34조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방법으로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장 또는 예심판사에게 알려야 한다. 사법관은 GPS에 대해 철회를 명령할 수 있다”.⁴⁷⁾

마찬가지로 “만일 거주지에 대해 수행이 필요하다면,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 모든 방법으로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제230-33조의 1°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서, 같은 목적 아래 검사장을 거쳐 석방구금판사에 의해; 2° 제230-33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서, 예심판사에 의해 혹은 만일 제59조에 규정된 시간 이외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 같은 목적 아래 예심판사를 거쳐 석방구금판사에 의해”(동조 제2항에서 제4항).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이어, GPS 시행 전 사전 동의를 요청을 받은 “사법관은 수행의 속행을 명령하기 위해 이를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허가가 없을 시에는 GPS를 종료해야 한다. 현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허가는 같은 항에 명시된 임박한 위험에 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⁴⁸⁾ “담당 사법관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GPS를 종료할 수 있다”.⁴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PS의 실행은 사법관의 허가, 즉 사법관 통제 아래 달성될 수 있다.⁵⁰⁾ 즉 경찰로부터 GPS 실행에 대한 허가 요청을 받은 관련 사법관은 이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때 GPS를 통해 어떤 범죄를 조사하기 위함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GPS를 실행하는 중 설령 “이 수행이 사법관의 결정문에 적시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추가 절차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⁵¹⁾ 이는 GPS 추적을 통해 기존에 확인했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가 밝혀질 시, 피의자를 새로운 범죄로 그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GPS의 실질적으로 형식이 갖추어지지 못할 시 취소 요청될 수 있다.⁵²⁾

프랑스 2014년 3월 28일 법률은 녹화된 GPS의 정보 관리 및 보관 역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책임 아래 사법경찰관리는 제230-32조에서 명시

47)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5조 제1항.

48)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5조 제5항.

49) Michèle-Laure RASSAT, *Procédure pénale 3e édition*, Ellipses, 2017, p. 310.

50)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7조 제1항에 따르면, “현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은 이를 허가한 또는 그것의 이행을 허가한 사법관의 통제 아래 달성된다”.

51)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7조 제2항.

52)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7 mars 2018, n°17-85.603.

된 기술의 시행에 있어, 위치 데이터의 녹화에 대한 각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조서는 수행 시작 및 종료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녹화는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⁵³⁾ 또한 “그들은 서류에 첨부된 조서 내 실제적 진실발견에 유용한 녹화데이터에 대한 설명 또는 전사해야 한다”.⁵⁴⁾ 만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 데이터에 대한 녹화는 파기되어야 하며,⁵⁵⁾ 파기의 이행에 대한 조서 역시 작성해야 한다”.⁵⁶⁾ 즉 녹화 보존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관련 사법기관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은 익명의 증언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706-58조⁵⁷⁾에서 제706-63조에서 규정한 모든 합법적 이익을 충족하도록 GPS에 대한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⁵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4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제706-73조와 제706-73-1조의 적용 범위 내에 중죄 또는 경죄 중 하나와 관련된 예심의 경우, 이와 같은 정보가 그 자신 또는 가족과 친척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실제적 진실발견에 유용하지 않은 또는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지 않은 때에는, 석방구금판사는 예심판사의 이유를 붙여 청구하여 모든 순간 해당 절차와 관련된 서류 내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허가할 수 있다 : 1° 제230-32조에 명시된 기술적 방법의 설치나 철회된 날짜, 시간, 장소. 2° 동조에 명시된 기술적 방법의 설치 또는 철회와 관련 있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허가하는 위치 데이터 녹화와 관련 요소.”

나아가, 동조 마지막 항은 “현 조 제1항에 언급된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은 기존 절차의 서류에 첨부되어야 하고, 1°와 2°에서 언급한 정보 및 제1항에 규정된 예심판사의 요청은

53)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8조.

54)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39조.

55)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43조 제1항.

56)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43조 제2항.

57) “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제705-57조에 규정된 자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인하여 그 자신 또는 가족과 친척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이유를 붙인 청구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 없이 증인의 진술을 소송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제706-60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복할 수 없다. 석방구금판사는 직접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은 증인신문 조서에 기재되고, 여기에는 이해관계자가 서명할 필요가 없다. 증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이해관계자가 서명한 다른 조서에 기재되며 그 조서는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번호를 붙이고 구분한 장부에 보관한다...”.

58) Jean PRADEL, *op.cit.*, p. 452.

다른 조서에 기재되며, 해당 절차의 서류와 별개 다른 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분류되어 서명된 장부에 기록되며 지방법원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대상자(Mise en examen) 또는 준예심대상자(Témoign assisté)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230-40조에 규정된 GPS의 실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한 날부터 10일 이내 동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해 예심부장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GPS의 실행이 정식 방법으로 실현되지 않거나 전 조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또는 동조에 규정된 정보가 방어권의 이행에 필수적이라고 사료될 시, 예심부장판사는 GPS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동조는 예심대상자 또는 준예심대상자의 불복에 대한 기각 역시 명시하고 있다 : “만일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인식이 자신 또는 가족과 친척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동조 마지막 항에 명시된 청구로 조서의 서류에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심부장판사는 절차 관련 서류 및 같은 항에 언급된 서류를 고려하여 불복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0-42조는 “어떠한 유죄 판결도 제230-40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 이를 근거로 선고될 수 없다. 동조 마지막 항에서 언급된 요청 또는 조서가 제230-41조의 적용 내에 있는 서류에 첨부된 경우라면, 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한국의 GPS 위치추적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

1. GPS 위치추적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GPS 정의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GPS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검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해 실행되

는 범죄수사 시 GPS는 사생활 침해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할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어 형사상 채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현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감에도, 범죄수사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일선에서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 추적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⁵⁹⁾ 형사소송법 내에서는 물론 특별법에서 역시 GPS 위치정보를 추적하도록 허용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내 수사실무 사례에 의하면 GPS 위치추적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정보를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⁶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PS 위치추적을 위해 영장을 요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아 이를 강제수사로 간주하고 있으며,⁶¹⁾ 강제수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 반해, 국내법상 직접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⁶²⁾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수사상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동법 제2조상 송·수신을 의미하는 ‘전기통신’의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고, 이 또한 강제수사로 해석되는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률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⁶³⁾ 따라서 현재 한국법 내 수사상 GPS 위치추적을 허용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2014년 3월 28일 법률⁶⁴⁾을 통해 GPS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내에 삽입하여 이를 활용 및 규제하고 있다. 사실 2014년 이전 프랑스에서는 판례상 GPS를 제한적으로 허가하였다(특히 프랑스 대법원 2011년 11월 22일 판결⁶⁵⁾).⁶⁶⁾ 마찬가지로 프랑스 헌법재판소⁶⁷⁾ 또한 합목적성에 비례하고 필요성이

59) 김지온/박원규, 앞의 논문, 83쪽.

60) 김지온/박원규, 위의 논문, 83쪽.

61) 이상경,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19, 85-86쪽.

62) 김지온/박원규, 앞의 논문, 95쪽.

63) 같은 해석으로, 김종구,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108-109쪽.

64) Loi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65)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2 novembre 2011, n°11-84.308.

66) Jean PRADEL, *op.cit.*, p. 450 ; 김유근/김정연/최준혁/김정환/박성민, 앞의 보고서, 244쪽.

높을 시 제한적인 사생활 침해는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즉 보호될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일부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 위치추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따른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입법부는 2014년 3월 28일 법률을 통해 GPS 위치추적의 정의, 적용범위, 기간연장, 전개방법과 통제, 나아가 절차위반에 대한 조치까지 면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삽입했다.

위와 같이 2014년 이전 프랑스 역시 명문규정 없이 현재 한국과 유사하게 수사의 일반규정을 근거로 형사상 GPS 위치추적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GPS 위치추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2014년에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도 GPS 위치추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GPS 위치추적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영장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강제수사 법정주의 위반⁶⁸⁾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⁹⁾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2018년 유럽인권재판소의 지적과 다르지 않다.

혹 GPS 위치추적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섭하여 법적 흠결 문제를 극복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⁷⁰⁾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을 넓혀 GPS 위치추적을 허용할 수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GPS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난점이 있고”,⁷¹⁾ “장기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의 개념을 무한정 확장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혼선을 줄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⁷²⁾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한국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GPS 위치추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7) Conseil constitutionnel, 25 mars 2014, n°2014-693.

68) 강제수사에 대한 의무적 영장발부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다.

69) 김지온(박원규, 앞의 논문, 92-95쪽; 이주호, “위치추적 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29-130쪽.

70) 이훈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2019, 517-523쪽; 이윤제,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법학논총 제20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461쪽.

71) 김종구,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108-109쪽.

72) 김지온(박원규, 앞의 논문, 95쪽.

2. 압수수색영장의 요청에 의한 과도한 엄격성

한국 현행법상 GPS 위치를 추적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일반규정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우리 법원은 GPS 위치추적기 서버를 수색하여 실시간 GPS 위치정보를 압수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⁷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PS 위치정보 추적은 사생활 존중의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 관련 깊다. 이에 따라 한국 형사소송법상 GPS 위치추적은 강제수사로 간주하여 영장을 받을 시 실행될 수 있다.

반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수사상 GPS 위치추적을 실행하기 위해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검사장의 또는 예심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의해 실행되거나(기간 연장의 경우 석방구금판사를 통해), 긴급 시 사법경찰관이 직접 이를 실행할 수 있다. GPS 위치추적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GPS 위치추적 장치가 강압에 의한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인했다.⁷⁴⁾ 반면 한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 GPS 위치추적을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⁷⁵⁾ 또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과학수사방법의 다양성을 단지 압수수색 영장에만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⁷⁶⁾

73) 이상경, 앞의 논문, 110쪽.

74) Conseil constitutionnel, 21 mars 2019, n°2019-778; Conseil constitutionnel, 25 mars 2014, n° 2014-693.

75) 김중구,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과 영장주의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107쪽; 김지온/박원규, 앞의 논문, 83쪽.

76) 김중구, “과학기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61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205-206쪽;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영장주의의 한계에 관해, 윤해성/최호진/박희영/이권일,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게다가 GPS 위치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송,수신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전기통신’의 개념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 근거로 들 수 없으며,⁷⁷⁾ 설사 GPS 위치추적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하더라도, 현재 통신제한조치를 강제수사로 보고 있기에,⁷⁸⁾⁷⁹⁾ 통제의 엄격성을 완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⁸⁰⁾ 또한 헌법 재판소는 2018년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으로 획득한 정보로 위치를 확인(이른바 기지국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⁸¹⁾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따라 분명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경우에 영장발급에 대한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며

본 논문은 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체계와 관련 법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는 국내법 내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률 제정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형사절차에 있어 GPS 위치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관련 있고,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배제한 채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미 학계에서는 수사상 GPS 위치추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률은 국내법 제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줄 수 있다.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1-2쪽.

77)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78)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9, 304쪽.

79) 통신제한조치의 엄격한 통제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에 관해, 유주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01-103쪽.

80) 저자의 의견과 반대로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관해, 박혜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소고 -위치정보추적수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4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73-374쪽; 통신제한조치 허가장에 대한 법원의 형식적 통제에 관해,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2012, 126-127쪽.

81)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게다가 프랑스 법률 제정 시 다루어졌던 입법배경 역시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인권침해 여부와 위치추적 조건 및 적용범위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설령 국내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이는 강제수사로 간주하여 영장을 요하는 GPS 위치추적 활용법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위와 같은 기여는 단지 수사상 GPS 위치추적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외 또 다른 과학기술적 방법 역시 자칫 남용될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에 큰 위협을 주어,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반면 너무 엄격히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목적인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률 검토는 GPS 위치추적을 넘어 수사상 다른 과학기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관련자의 동의 없이 디엔에이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영장은 필수적이다.⁸²⁾ 하지만 이는 다른 조치의 영장과 달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으로 더 엄격히 통제되며, 실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GPS 위치추적을 비롯해 다른 과학기법 활용과 인권침해 간에 비례성을 검토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8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9.

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 26e édition*, Dalloz, 2017.

Bernard BOULOC/Haritini MATSOPOULOU,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19e édition*, Sirey, 2014.

Christian GUÉRY, *Le droit et pratique de l'instruction préparatoire*, Dalloz Action, 2022.

Corinne RENAULT-BRAHINSKY, *L'essentiel de la procédure pénale 19e édition*, Gualino, 2019.

Frédéric DEBOVE/François FALLETTI/Iris PONS, *Précis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8e édition*, Puf, 2020.

Jean PRADEL, *Procédure pénale 20e édition*, Cujas, 2019.

Michèle-Laure RASSAT, *Procédure pénale 3e édition*, Ellipses, 2017.

Serge GUINCHARD/Jacques BUISSON, *Procédure pénale 11e édition*, LexisNexis, 2018.

Yves MAYAUD, *Le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 Terrorisme – Poursuites et indemnisation*, Dalloz, 2020.

2. 학술지

김종구, “과학기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61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189-216쪽.

_____,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87-115쪽.

_____,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3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63-188쪽.

김지온/박원규,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81-112쪽.

박혜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소고 -위치정보추적수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4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73-374쪽.

- 유주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04쪽.
- 이상경,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19, 77-116쪽.
-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2012, 126-127쪽.
- 이윤제,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법학논총 제20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461쪽.
- 이훈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2019, 497-528쪽.

Dorothee GOETZ,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 du dispositif de géolocalisation sur autorisation du parquet”, *Dalloz Actualité*, le 30 septembre 2021, n° 1 et ss.

3. 학위논문

- 이주호, “위치추적 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 연구보고서

- 김유근/김정연/최준혁/김정환/박성민,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연구(III)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 윤해성/최호진/박희영/이권일,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Abstract]

L'Analyse sur la Loi française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et l'Examen des Suggestions

Seungbeom SIM*

La géolocalisation est un moyen de localiser une personne ou un objet en temps réel. Elle est efficacement utilisée dans une procédure pénale. Notamment, elle vise à rassembler des preuves et à localiser un criminel dans le cadre de l'enquête policière. Pourtant, l'abus de ce mode peut porter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Pour cette raison, la loi doit le contrôler afin de garantir les droits fondamentaux comme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Puisqu'il n'existe pas la loi permettant évidemment la géolocalisation en droit coréen, les enquêteurs ont des difficultés à utiliser régulièrement ce moyen. Par contre, le législateur français a établi la loi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pour prévoir clairement la géolocalisation dans une procédure pénale. Cette loi mentionne la définition, le champ d'application et le déroulement de cette mesure en détail. De plus, vu que le droit coréen demande la délivrance d'un mandat de saisie et de perquisition, la géolocalisation considérée comme l'enquête coercitive doit être nettement prévu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Au contraire, le droit français ne demande pas ce mandat pour réaliser cette mesure. Ainsi, l'analyse sur la loi français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contribuerait à la législation de la loi coréenne sur la géolocalisation et à l'adoucissement du contrôle excessif de ce moyen.

[Key Words] Géolocalisation, enquête coercitive,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enquête scientifiqu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 Docteur en droit,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